

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7의6] <개정 2026. 1. 6.>

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(제2조제21항 관련)

별표 17의6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()을 클릭한 후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,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.

http://www.law.go.kr/BYL/grtFile/law0101752026010636017KC_001706E.xls